

이 보도자료는 2018. 6. 20.(수) 14:00부터 보도하여 주시고, 공개되는 범죄사실은 재판을 통하여 확정된 사실이 아님을 유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시청

공보담당관 지청장 조기룡
전화 043-845-3600/ 팩스 043-841-4225

보 도 자 료 2018. 6. 20.(수)

자료문의
전화: 043-856-6401
주책임자: 부장검사 주진우

제 목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건 수사 결과**

- 오늘(6. 20.) 청주지방검찰청 충주시청(지청장 조기룡)은 이번 제7회 지방선거 음성군수 선거와 관련하여,
 - 선거구민 23명에게 음성군수 출마예정자의 지지를 부탁하여 부정선거 운동을 하고, 출마예정자에게 군내 행사 일정 및 선거 관련 동향을 송부하여 선거에 부정의 영향을 행사하고, 출마예정자의 경선 승리를 위해 권리당원을 모집한 **음성군청 공무원 A를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구속 기소**하고,
 - A와 공모하여 **권리당원을 모집한 음성군청 공무원 B**, 권리당원 모집을 부탁한 **출마예정자 C(별건 구속)**, 권리당원 모집 **중간책임 음성군청 청원경찰 D**를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혐의로 각각 **불구속 기소**함
- 특정 후보에 대한 지지 모임을 만들어 활동한 **군청 공무원 4명을 음성군청 감사관실에 징계의뢰**함
- 본건은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를 위해 각종 선거중립의무를 위반한 사안으로 향후에도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 위반 사범에 대해서는 엄정히 수사하여 공정한 선거문화 확립을 위하여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I **피고인 및 공소사실 요지**

- 피고인
 - 피고인 A (52세, 음성군청 공무원)
 - 피고인 B (53세, 음성군청 공무원)
 - 피고인 C (56세, 음성군수 입후보예정자)
 - 피고인 D (43세, 음성군청 청원경찰, 공직선거법상 비공무원)

○ 공소사실 요지

1. 피고인 A : 공직선거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구속 기소]

- '17. 8.~'17. 12. 총 7회에 걸쳐 선거구민 23명에게 “C를 음성군수로 뽑아 달라”며 지지 부탁 **【공무원 부정선거운동】**
- '17. 9.~'18. 3. 총 15회에 걸쳐 음성군 행사 일정 및 예상참석 인원 등을 C에게 송부 **【공무원 지위 이용 영향력행사】**
- '17. 8. C는 D를 통해 “음성군수 후보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A는 8명, B는 9명의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서 제출 **【공무원 당내경선운동 및 당원모집금지위반】**

2. 피고인 B, C, D : 공직선거법위반, 지방공무원법위반 [불구속 기소]

- '17. 8. C는 D를 통해 “음성군수 후보 경선에서 자신을 지지해 줄 권리당원을 모집해 달라”는 부탁을 하여 A는 8명, B는 9명의 권리당원을 모집, 입당서 제출 **【공무원 당내경선운동 및 당원모집금지위반】**
- ※ C와 D는 비공무원이나, 공무원인 A와 B의 범행에 가담하여 공모로 의음

II 수사 경과

- '18. 4. 11. 음성군선관위 C에 대한 공직선거법위반 혐의 고발(금품살포)
 - ▶ 위 금품살포 사건 수사 중 단서 포착[C의 휴대전화에서 범죄단서 발견]
- '18. 5. 16. 피고인 A 공직선거법위반 입건
- '18. 5. 17. 군청 사무실 등 압수수색, 휴대전화 등 증거 확보
- '18. 5. 17.~6. 1. 선거운동 상대방, 관련 공무원 조사
- '18. 6. 7. 피고인 A 구속영장 발부
- '18. 6. 18. 피고인 B, C, D 공직선거법위반·지방공무원법위반 입건
 - ▶ 피고인 A에 대한 사건 수사 중 단서 포착[A의 휴대전화에서 범죄단서 발견]
- '18. 6. 20. 피고인 A 구속 기소 / 피고인 B, C, D 각 불구속 기소
 - ※ 공무원 중 일부는 C의 지지 세력을 모집하기 위해 단합 행위를 하는 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의무를 위반(일반규정 위반)한 행태를 포착하여 군청 감사관실에 징계 의뢰함

III 향후 계획

- 공직선거법은 공무원 등 공직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폭넓게 규제하고 있는 바, 이는 관련선거나 공직 지위에 있는 자의 선거 개입의 여지를 철저히 불식시켜 선거의 공정성을 확보하기 위한 것이므로, 향후 유사 범죄에 대하여는 엄정히 대처해 나갈 계획
- 본건은 선거중립의무를 준수하여야 하는 공무원들이 유력 후보에 대해 소위 '출서기'를 한 사안으로 주범은 구속 기소하여 엄정히 대처하고, 공직선거법상 공무원의 중립의무에 관한 일반규정 위반자에 대하여도 징계 의뢰함으로써 공정한 선거 풍토 확립을 위해 노력할 예정임■